

의안번호	2206878
의 퇴 인	강훈식의원
회 답 일	2025.1.13.
추계번호	24D625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2조의3 (투자자보호기금 의 설치 등) 신설	- 정부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 - 기금은 안 제44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과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의 용도로 사용함	의무규정
	안 제442조의4 (기금의 관리·운 용) 신설	-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·운용함(제1항) -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둠(제3항 및 제4항)	의무규정
	안 제442조의5 (기금의 지원) 신 설	기금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와 몰수·추징이 과해진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2조의3 (투자자보호기금 의 설치 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42조의4 (기금의 관리·운 용) 신설	
3	안 제442조의5 (기금의 지원) 신 설	

2. 상세 사유

□ 투자자보호기금의 설치·관리·운영(안 제442조의3, 제442조의4제1항, 제442조의5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을 정부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라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음
 - 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 또는 제429조의2(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)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¹⁾
 - 제447조의2에 따라 몰수·추징이 과해진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²⁾
- 다만, 공시위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자, 몰수·추징 부과자와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투자자 및 손해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 사례로 금융위원회는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, 2025년 예산안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은 241억 4,700만원임

□ 투자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설치(안 제442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투자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함)를 설치하는 경우 민간위원 회의수당 및 인쇄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참고로, 최근 3년간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공시위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] 최근 3년간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: 2022~2024년

	2022	2023	2024
과징금 부과 (명)	57	64	94
과징금 부과 총액 (백만원)	10,386	27,569	7,715

자료: 금융위원회

2) 대법원에 따르면 제447조의2에 따라 몰수·추징이 과해진 자에 대한 수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음

- 다만,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심의회의 규모 및 민간위원의 수 등 구성을 추정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금융위원회는 「공적자금상환기금법」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, 2025년 예산안 기준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수당, 인쇄비 등으로 5백만원을 편성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